##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 기관」 모집 공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고독사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2.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 기관 모집 공고

#### 1 지정 개요

- □ (지정배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제12조에 따라 고독사 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 추진
- □ **[사업예산] 150백만원** (지정시점~'24년)
-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2 사업 내용

#### ① 고독사 실태조사 시행

- 고독사 사망자 통계 작성
  -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고독사 발생 현황 및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 고독사 관련 정보 보유기관과의 정보 제공 체계 마련 등 신뢰성 있는 통계를 안정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
  - 통계 분석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고독사 위험군 실태 파악 및 통계 작성
  - 고독사 위험요인, 고독사 위험군의 복지 욕구 등 파악을 위한 조사 설계·시행
  - 통계 분석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②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 고독사예방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보고** 지원
-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지원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개발·보완 등 평가체계 마련,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개선사항 제안 등 추진

#### ③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 고독사 예방·관리 관련 통계·선행연구·국내외사례 수집 및 분석, 지자체 대상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정책연구 수행
- 고독사 예방·관리 관련 **사업설계, 사업지침 마련, 사업 효과성 평가**, **우수사례 선정·공유** 등 **사업 시행** 지원(자율사항)

## 3 신청 자격 및 방법

#### □ 신청 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와 조사·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 신청 방법

- (제출기간) 2024. 4.2.(화) ~ 2024. 4.16(화) 18:00까지
  -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지정 신청 공문,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요약문\* 등 첨부서류(붙임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한글 파일 및 직인이 날인된 원본 스캔본 함께 제출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전자메일 접수(dream9829@korea.kr)
  - \* (주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 4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 (선정 방법) 관련 학계 등 전문가와 공무원 등 포함 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 선정된 기관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비 내역 조정 등 필요
- (평가 기준)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심사, 종합점수 8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 1개 기관만 지정 신청한 경우, 심사 결과 80점 이상이면 최종 선정

#### [평가 영역별 점수]

영역	평 가 항 목							
사업 필요성 및 목표의	○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적절성(30점)	○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 사업내용의 충실성, 독창성 및 차별성							
적절성(30점)	○ 수행방법의 창의성, 독창성 및 차별성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 적정 예산 가용 여부(자체예산 가용 여부 포함)							
적절성(20점)	○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전문인력·시설·장비 유무							
고독사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실적(20)	○ 사업수행능력을 반영하는 조사·연구 수행실적 유무							
	합 계(100)							

##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됨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위탁사업 세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관 선정 후 14일 이내 계약체결
- 기타 문의 : 지역복지과 김유라 서기관(044-202-3124), 지역복지과 박신영 주무관(044-202-3130)

## 6 향후 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일 정
① 신청 접수	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o 지정신청 접수	4.2.~4.16.
② 기관 심사·평가	ㅇ 심사위원회 개최	4월 3주
③ 기관 지정·계약	ㅇ 선정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4월3주~4주

<sup>\*</sup> 공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1 전문 조사 · 연구 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6조에 따라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3. 그 밖에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와 조사·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 조사·연구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 2.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의 보유 여부(확보 계획 포함)
- 3.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고독사 통계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계획서
-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 · 연구의 수행 계획서

- 3. 고독사 통계의 수집 · 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 · 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5. 고독사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조사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전문조사연구기관 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문조사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3급 및 4급 공무원이 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지정사실의 통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조사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전문조사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1. 지정된 전문조사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 3. 주요 기능 및 역할
- 제6조(지정기간) ①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지정된 전문연구조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 여야 한다.
- 제7조(지정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연구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9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될 당시보다 현저히 연구능력 등이 미달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지정기관이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조사연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장은 전문조사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조사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법인 • 단체명				
신청인	소재지		전호	번호	
	대표자 성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 고독사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붙임 2 첨부서류 작성 양식

## [양식1]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기관 운영사업 사업계획서 요약문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71 12 0	성 명				직급/직	위					
사 업 책 임 자	소 속			전화			FAX				
וים ר	부 서				E-MAII	L					
예 상	총	계	보조금	자치	] 예산	기타 c	예산				
<b>사 업 비</b> (2024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참여 인원수	명		
사업기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기관 운영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Ļ	년 월	일					
			기관장			į	직 인	(인)			
보건복지	부장관 :	귀하									
< 구비서류> 1.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 계획서 00부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의 수행계획서 00부 3.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00부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00부 5. 고독사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 실적 관련 자료 00부											
사업담당부 담당자 이름 사업수행기	<u>:</u> :		연락처(Tel.		,	Fax.		)			

#### [양식2]

##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 계획서

-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 ※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
- 2.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3. 2024년~2026년 주요 사업계획
- 4. 사업예산
  - (1) 재원조달

구분	보조금	자체 예산	기타 예산	총 계
금액(천원)				
백분율(%)				100

- (2) 세부예산 (※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 가. 예산 산출내역(해당 항목만 기재)

7 8	보조	보조	사중네어	금액	비율	<del>:</del> (%)
구분	비목	세목	산출내역	(천원)	구분	전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자체		재료비				
수행						
경비	•••	•••				
	•••	•••				
	•••					
	자처	수행경비 총계			1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 용역비		재료비				
(위탁		•••				
사업비)	•••	•••				
	•••	•••				
	•••	•••				
		용역비 총계			100	
		전체 총액				100

#### 나. 자체 및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 5. 사업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미끄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		월 별 1 2 3 4 5 6 7					

#### 6. 평가 참고사항

- (1)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 (2) 사업수행기관 전체의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 (3)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양식3]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의 수행계획서

####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

#### 2.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3. 2024년~2026년 주요 사업계획

#### 4. 사업예산

#### (1) 재원조달

구분	보조금	자체 예산	기타 예산	총 계
금액(천원)				
백분율(%)				100

#### (2) 세부예산

## 가. 예산 산출내역(해당 항목만 기재)

7 H	보조	보조	시호네어	금액	비율	<del>?</del> (%)
구분	비목	세목	산출내역	(천원)	구분	전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자체		재료비				
수행		•••				
경비	•••	•••				
	•••	•••				
	•••	•••				
	자처	수행경비 총계			1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 용역비		재료비				
(위탁		•••				
사업비)	•••	•••				
	•••	•••				
	•••	•••				
		용역비 총계			100	
		전체 총액			·	100

## 나. 자체 및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 5. 사업추진 일정

월 별									HI TO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							

## [양식4]

##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1. 사업수행 인력

## (1) 0000팀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2) 0000팀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3) 0000팀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2. 시설 및 장비 현황

※ 자유 양식

## [양식5]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1. 사업수행 인력

## (1) 0000팀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2) 0000팀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3) 0000팀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2. 시설 및 장비 현황

※ 자유 양식

## [양식6]

# 고독사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 실적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 자유 양식